



제2946호 2024. 5. 3.(금)

www.jeonbuk.go.kr.

조 례

- 조례 제5492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조례 제5493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례 제5494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조례 제5495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조례 제5496호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7
- 조례 제5497호 전북에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례 제5498호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례 제5499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 14
- 조례 제5500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조례 제5501호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 18
- 조례 제5502호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20
- 조례 제5503호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조례 제5504호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0
- 조례 제550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규 칙

- 규칙 제3238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규칙 제3239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소방본부 규칙 일괄개정규칙 ... 36
- 규칙 제3240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8

훈 령

- 훈령 제1816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훈령 45
- 훈령 제1817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장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50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2호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을 “조례에서”로,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을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를 “아은 사람으로서,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누리집”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3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동의”를 “공동”으로, “유통, 교환, 소비하는”을 “유통, 교환, 소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연합회, 전국연합회”를 “연합회, 전국연합회”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영어조합 법”을 “영어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조합공동사업 법인, 산림조합중앙회”를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으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공유경제, 공정무역”을 “공유경제, 공정무역”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비영리민간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이란”을 “중간지원조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발전, 시장”을 “발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고용, 사회통합”을 “고용, 사회통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이란”을 ““사회적경제조직”이란”으로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

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자치도”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 인권, 환경, 복지”를 “노동, 인권, 환경, 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로 한다.

⑧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각각 “전북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목표, 중장기”를 “목표, 중장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각각 “전북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적경제 기금”을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 중 “구축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 기금”을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4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제6조제1항 중 ““기금관리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은 기금관리”를 “작성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여유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6 이상을”을 “6을”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금 운용”을 “기금운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분임운용관 :”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5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기본법」 제3조”를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제9조 중 “「청년기본법」 제16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2항”으로, “1 이상의 범위에서”를 “3 이상을”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 중 “「청년기본법」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청년친화도시) ①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6호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방안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북

특별자치도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의 발굴·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상담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7호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의”를 “전북특별자치도민의”로, “도민 참여”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참여”로, “발전율”을 “발전에”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전북자치도민”이라 한다)과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애향본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중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 하여금”을 “가 추진하는”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자랑스런 전북인”을 “그 밖에 자랑스런 전북자치도민”으로, “홍보사업 등”을 “홍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1. 애향본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2. 애향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 3. 애향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 4. 애향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정산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

제6조(포상) 도지사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우수하고 전북자치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8호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0. 1. 7, 2000. 11. 3, 2002. 8. 16, 2003. 5. 16, 2003. 8. 8, 2006. 12. 29, 2010. 12. 31, 2013. 3. 15, 2016. 3. 25, 2017. 5. 19, 2018. 8. 10, 2021. 8. 13.>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준	요액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용역·물품의 제조 및 납품실적증명	1통	5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500
4) 공사준공사실(실적)증명	1통	500
나.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
2.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1통	5,000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통	500
나. 농수산 관계		
1) 어업허가 지위승계	1건	4,500
다. 경제행정관계		
1)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
2)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가)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변경 등록	1건	20,000
나)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
라. 공유재산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개정 2000. 1. 7 조례2728>

수수료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5조 관련)

15cm

1.5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9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 기여, 사회 안전·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환경·

사회·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도,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정축제의 선정 및 평가, 지원
3.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 지원
4.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

제9조(우수 행사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500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상임단원”이란”을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임단원”이란 국악원 공연에 따라 단원의 부족 인원 발생시에 대비하여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원으로 재직 중 제3조제2항의 실장·예술감독(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임용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501호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이하 “진흥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502호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대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자율소방대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회는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관 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임무수행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제4호 각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시장명			
주소			
대장	성명	성별	연락처
부대장	성명	성별	연락처
대원수	명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	----------------------

[별지 제2호서식]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	등록일	시장명	대장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시장명		조직구성년도	
	주소			
	연락처 (이동전화)	()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항목			
	활용용도			
	기대효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503호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REC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REC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으로서 제1호와 관련한 한국형 알이백에 가입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알이백 참여 기업제품등”이란 알이백 참여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자치도가 설립·투자·출자·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알이백 참여 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과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 등의 지원

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의 판매 촉진 지원

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는 사업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망사용료 지원
2. CDP의 알이백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3. 전북자치도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전북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지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외)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504호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전문 인력 양성 방안
9.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술개발·연구 및 사업화
3. 전문 인력 양성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관리 기술개발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8.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경보전)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군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단지의 간격(間隔)과 산지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
2.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 등의 이용
3. 인재 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변경·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
3.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시·군,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발전사업 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매년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50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이내”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3238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준감”을 “소방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소방본부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3239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소방본부 규칙 일괄개정규칙

1편 119대응과 소관

제1조(「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위원장 : 방호구조과장”을 “위원장: 대응예방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 원 :”을 “위원:”으로, “방호구조팀장”을 “대응총괄팀장 또는 대응구조팀장”으로 한다.

2편 119특수대응단 소관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항공대장”을 “119항공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19특수대응단장

나. 119항공대장

제6조제2항제2호 중 “방호예방과장”을 “119대응과장”으로, “구조구급과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감찰과장”을 “소방감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대장”을 “119항공대장”으로 한다.

3편 예방안전과 소관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회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회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대응구조과 예방지도담당”을 “소관부서의 팀장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3240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자문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

- 소속/성명(생년월일) :
- 위촉기간 :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으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자문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의 준수 사항

1. 전북특별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축 장

소 속
변호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전북 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자문 의뢰서

자문 건명	
자문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송사건 <input type="checkbox"/> 법령해석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input type="checkbox"/> 기타
1. 자문 사유(요지)	-
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
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갑설 나. 을설	- - -
4. 부서의견	-
첨부서류	
회신요청 기한	20 . . . 까지 * 자문일 기준 4~5일 이후로 여유 있게 부여
2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000-0000, FAX 0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문 결과서

자문 건명					
자문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송사건 <input type="checkbox"/> 법령해석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률고문(성명)		자문일자		자문시간	시간 분
자문내용	1. 자문 사유(요지)				
	2. 관련법령 및 조문내용				
	3.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나. 을설 :				
	4. 부서 의견				
자문결과	[답변 요지]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과) ○○과(팀) (담당자 소방○ ○○○ ☎ 000-0000)					

[별지 제5호 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자문 건명 :						
자문 의뢰(평가자)				자문 회신		
의뢰일	소관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회신일	변호사 성명	답변 형식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가항목	점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구분</td> <td>즉석 3시간이상 자문</td> <td>3시간이내 회신</td> <td>당일 회신</td> <td>2일이내 회신</td> </tr> <tr> <td>점수</td>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1점</td> </tr> </table>	구분	즉석 3시간이상 자문	3시간이내 회신	당일 회신	2일이내 회신	점수	5점	4점	3점	1점	
구분	즉석 3시간이상 자문	3시간이내 회신	당일 회신	2일이내 회신							
점수	5점	4점	3점	1점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난이도 평가(소방 법률지원 담당부서)

평가항목	점수
o 자문의 난이도(30점) -----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훈령 제1816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관서(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가”를 “소방본부장이”로, “소방본부장을 포함하여 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행정팀장”을 “소방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관서에”를 “기관에”로, “6개월”을 “1년”으로, “관서로”를 “기관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소방검사업무 담당자(소방검사 전담반)”을 “화재안전조사업무 담당자(화재안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관서별”을 “소방기관별”로 한다.

마. 항공업무(조정·정비·운항관제)

바. 선박업무(항해사·기관사)

사. 화학업무

아. 자동차정비업무

자. 건축업무

차. 회계업무

카. 법률·소송업무

제9조제2항 본문 중 “특별채용자”를 “경력경쟁채용자”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5할, 시험 5”를 “6할, 시험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소방서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방관서(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소방기관 ----- ----- -----.</p>
<p>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소방본부장을 포함하여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p>제3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소방본부장이 ----- 소방정 ----- -----.</p>
<p>제5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소방행정팀장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간사) ① ----- 소방행정지원팀장-----.</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전보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 및 관서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위 및 관서로 전보 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와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전보 조치 할 수 있다.</p>	<p>제7조(전보의 제한) ----- 기관에 ----- 1년 ----- 기관 으로 -----. ----- ----- -----.</p>
<p>제8조(순환 보직)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특수 직무분야 및 민원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수 직무분야</p> <p>가. ~ 라. (생 략)</p> <p>마. 회전익 항공기 조정·정비</p> <p>바. 구조·구급정 향해사, 기관사</p> <p><신 설></p>	<p>제8조(순환 보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항공업무(조정·정비·운항관계)</p> <p>바. 선박업무(향해사·기관사)</p> <p>사. 화학업무</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민원업무 담당자

가. ~ 다. (생 략)

라. 소방검사업무 담당자(소방검사 전담반이 편성된 경우에 한한다)

마. (생 략)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 소방관서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신규 임용자의 순환 보직) ① (생 략)

② 특별채용자는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장기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보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소방본부 전입 및 보직기준)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자를 선발하여 전입하여야 하며,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 직무분야 및 민원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① 소방관서에서 제8조 규정에 의한 특수 직무분야에 종사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관서장이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생 략)

아. 자동차정비업무

자. 건축업무

차. 회계업무

카. 법률·소송업무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화재안전조사업무 담당자(화재안전조사단-----)

마. (현행과 같음)

③----- 소방기관별-----

제9조(신규 임용자의 순환 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경쟁채용자-----

제10조(소방본부 전입 및 보직기준) ----- 소방기관-----

제11조(특수 직무분야 및 민원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① 소방기관-----

1. ~ 3. (현행과 같음)

4. ----- 2년 -----

5. 소방기관의 장-----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채용분야의 변경) ① 소방서장은 소방위 이하 소속 직원의 채용분야(소방·운전·구조·구급·화재진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변경이 가능한 채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소방 또는 운전분야에서 화재진압분야로의 변경
- 2. 구조분야에서 화재진압분야로의 변경
- 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용분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만 변경을 한다.

④ 분야별 채용분야 변경에 필요한 자격요건, 시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14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을 제외하고는 각 계급의 승진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생략)
- 2. 소방위이하 — 심사 5할, 시험 5할 병행

② 제1항제3호 시험승진 각 계급별 선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승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계급별 결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시험승진 선발인원에 산입한다.

제15조(특정부서 근무자의 우대) ① (생략)

② 각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우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운영의 보고) 각 소방서장은 임용권자가 알아야 할 여러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4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 6할, 시험 4-----

② 제1항제2호 -----

-----.

<삭제>

제15조(특정부서 근무자의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방기관의 장-----

-----.

제17조(인사운영의 보고) -- 소방기관의 장-----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장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훈령 제1817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장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장 직무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장 직무대리 규정”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장 직무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서”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서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과장·기동단장”을 “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서의 과장·기동단장”을 “소방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관서의 장 이외”를 “소방기관의 장 이외”로, “소속소방관서”를 “소속소방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장 직무대리 규정</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의 직 무상의 공백을 없게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정대리) 소방관서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 결 원·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p> <p>1. 소방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계급순·직제 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기동단장이 대리한 다.</p> <p>2. 소방서의 과장·기동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계급순·직제상의 순위 에 의한 직원이 대리한다.</p> <p>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 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 는 바에 의한다.</p> <p>1. 소방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한 다.</p> <p>2. 소방관서의 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소속소방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 계급순·직제순위에 의하여 대리할자를 지정한 다. 다만, 과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p> <p>② (생 략)</p>	<p>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장 직무대리 규정</p> <p>제1조(목적) ----- 소방기관----- ----- -----.</p> <p>제2조(법정대리) 소방기관----- ----- -----.</p> <p>1. 소방기관의 장----- ----- 과장급-----.</p> <p>2. 소방기관의 과장급----- -----.</p> <p>제3조(지정대리) ①----- -----.</p> <p>1. 소방기관----- -----.</p> <p>2. 소방기관의 장 이외----- -- 소속소방기관----- ----- -----.</p> <p>② (현행과 같음)</p>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16호

공유수면매립(대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인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른 매립 준공검사를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5월 3일

■ 고 시 사 항

- ① 준공검사 인가 연월일 : 2024. 4. 29.(면허번호 : 전북2021-1, 2021.9.17.)
- ②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 주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성명 : 부안군수
- ③ 매립 목적
 - 대리항 어촌뉴딜 300사업(공동작업장)
- ④ 매립공사구역 위치와 면적

위 치	지 목	면적(m ²)	비 고
부안군 위도면 대리 456	잡종지	505	

- ⑤ 매립공사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11월
- ⑥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바닷가 및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공유수면매립 반영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적법 조치할 것
 - 매립한 공유수면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와 더불어 낙상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해양생태계의 영향과 해양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미처리된 침출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항만과 해양환경정책팀 최남선(280-465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17호

공유수면매립(모항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인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른 매립 준공검사를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5월 3일

■ 고 시 사 항

- ① 준공검사 인가 연월일 : 2024. 4. 29.(면허번호 : 전북2021-2, 2021.9.17.)
- ②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 주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성명 : 부안군수
- ③ 매립 목적
 - 모항항 어촌뉴딜300사업(공공시설용지-호안 도로 정비)
- ④ 매립공사구역 위치와 면적

위 치	지 목	면적(m ²)	비 고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145	도로	755	

- ⑤ 매립공사 기간 : 2022년 5월 ~ 2023년 7월
- ⑥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바닷가 및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공유수면매립 반영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적법 조치할 것
 - 매립한 공유수면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와 더불어 낙상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해양생태계의 영향과 해양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미처리된 침출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항만과 해양환경정책팀 최남선(280-465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2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5월 3일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목적 및 기능 등(안 제1조~2조)
-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3조~7조)
- 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회의 등(안 제8조~10조)
- 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의견청취 및 회의록 등(안 제11~13조)
- 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자치행정과(위원회), 법무행정과, 기업유치추진단, 관광산업과 등
- 라. 기타
 - 1) 입법예고 : 2024. 5. 3. ~ 2024. 5. 24.(20일간)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정책개발팀

(전화 : 063-280-2304, FAX : 063-280-2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정책개발팀

(063-280-23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2.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심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교육감과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3명
- 2. 다음 각 목의 관련 기관·단체·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가. 농생명산업·임업·수산업분야
 - 나. 문화·체육·관광·예술분야
 - 다.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 라. 환경분야
 - 마. 지역산업 및 지역개발분야

3. 관련 분야 실국장

⑤ 종합계획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종합계획심의회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종합계획심의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기관·단체·관계전문가

② 종합계획심의회의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해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해야하고, 전북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생명산업, 전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생명경제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존·관리와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9.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

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5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 ③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는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심의회 운영비 연800만원)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은빈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60호

비영리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재단법인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05-51호
- ② 단체명칭 :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 ③ 대 표 자 : 양오봉
- ④ 소 재 지 : 익산시 하나로 820-120
- ⑤ 변경사항 : 정관 변경
- ⑥ 변경허가일자 : 2024. 4. 25.

※ 기타 문의사항은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 조성우(280-268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정관 변경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 법인의 설립 목적은 국내·외 동물의약품관리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동물용의약품 전문 GLP(Good Laboratory Practice)와 GCP(Good Clinical Practice)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동물용의약품의 효능, 안전성평가에 관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여 각종 질병연구 및 의약품개발 확대,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가인증센터를 구축을 통하여 해외수출을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발비용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비용절감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관련분야 및 지역	제2조(목적) 법인의 설립은 동물용의약품등 연관 산업 육성의 거점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각종 질병 연구 및 의약품등 개발 확대, 기업의 산업화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련분야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육성을 지원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820-120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분사무소, 부설기관 및 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생략

1. 동물 의약품, 동물 의약외품, 동물 의료기기 효능평가
2. 동물 의약품, 동물 의약외품, 동물 의료기기 안전성평가
3.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진단
4. 진단키트 및 진단기기 평가
5. 동물 실험 시설 임대
6.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병원체 연구
7.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8. 산, 학, 연, 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
9. 조달청 등 연구용역사업 수주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10.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생략)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략).

1.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다.

제7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전북
특별자치도 -----

제4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동물용 의약품 등 효능·안전성평가
2. 동물용 의약품 등 시제품 생산 지원
3. 동물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등 진단과 연구자 원 보존 및 활용
4. 창업보육과 동물용 의약품 등 기업유치 및 육성 지원
5.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과 개방실험실 운영
6. 동물용 의약품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7. 동물용 의약품 등 연관산업 집적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
8.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사회 의결

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주무관청“라고 한다)-----

제7조(이사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임직 이사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제8조~ 제9조 (생략)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동물용의약품 평가분야, 경영 및 지역혁신 등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원장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등은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단, 초대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임기가 만료된 때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원장이 기타 사유로 임기만료 이전에 결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후임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며, 이 법인 이외의 다른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의 해임)

① 선임직 이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개최가 현저히 어려울 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결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스스로 해임을 원할 때
- 3. 기타 사유로 이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선임직 이사가 해임되었을 때는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후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0조(조문 정비) (현행과 같음)

제11조(원장) (조문 정비)

① -----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등은 법인의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임기가 만료된 때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법인의 이사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및 실적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이사회가 요구한 사항

⑥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저조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⑦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감사)

① (생략)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회계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해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원장이 기타 사유로 임기 만료 이전에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후임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⑤ 원장은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며, 이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의 이사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및 실적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이사회가 요구한 사항

⑦ 원장이 제5조제4항이외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기관운영 성과가 극히 저조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⑧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 (조문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임기 만료 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제17조 (생략)

제18조(의결정족수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제30조 (생략)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

④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감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회계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제18조 (조문 정비) (현행과 같음)

제19조(의결정족수 등) (조문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제20조(서면결의) (조문 정비)

①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에게 해당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차기 이사회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제31조(조문 정비)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조문 정비)

① -----

----- 주무관청에 보고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략)

② 법인은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감사결과 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운영·전문기술·자문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

1.~6. (생략)

③ 생략

- 1.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분야 전반 총괄
- 2.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동물용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연구용역사업의 기획·수행

④ (생략)

- 1. 동물용의약품 평가 및 허가에 관한 자문
- 2. 동물용의약품 GLP 시설에 관한 자문
- 3. 동물용의약품 생산 등 업체 동향 및 기술에 관한 자문

⑤ (생략)

제34조(기구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 주무관청에 -----

제33조(결산) ----- 감사 ----- 주무관청에 ----- 재산목록 -----

제34조(운영·전문기술·자문위원회 설치)(조문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1. 동물용의약품등 효능·안전성 평가 분야 전문기술 지원
- 2. 동물용의약품등 시제품 생산 분야 전문기술 지원
- 3. 동물용의약품등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 4. 동물용의약품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 5.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기획 및 수행 지원

④ (현행과 같음)

- 1. 동물용의약품등 평가 및 허가에 관한 자문
- 2. 동물용의약품 시험시설에 관한 자문
- 3. 동물용의약품등 기업 동향 및 기술에 관한 자문

⑤ (현황과 같음)

제35조(기구 및 구성) (조문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주요 직위(센터장 등)에 대한 채용은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p>제3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3.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4. 자산대장 <p>제36조~제37조 (생략)</p> <p>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p> <p>제39조(공고의 방법)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40조~제41조 (생략)</p>	<p>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p> <p>제3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조문 정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은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6.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관계서류 <p>제37조~제38조(조문 정비) (현행과 같음)</p> <p>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 ----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p> <p>제40조(공고의 방법) ----- ----- 지역 일간신문----- ----- -----</p> <p>제41조~제42조(조문정비) (현행과 같음)</p>
---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6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3년 5월 3일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례 안 (3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강혜선 주무관 280-423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제도과 정지은 주무관 280-278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 (소방감찰과 고광표 주무관 280-3705)
예결 산안 (2건)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과 김상민 주무관 280-3015)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 (예산과 정혜민 주무관 280-310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64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소재지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5월 03일

1. 공고기간 : 2024. 5. 3. ~ 5. 17.

2.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디에스엔전주(주) 대표 최대식				
	주 소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1 영광빌딩 5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1항제4호 -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북특별 자치도청	부서명	정보화정책과	담당자	정 승 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063-280-3002	
	일 시	2024년 5월 30일(목) 14:00시부터 14:30시까지(30분)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청 상설청문장 (1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청문주재관			
성 명		김 선 주(063-280-3885)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화정책과 통신관리팀 담당자(063-280-30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72호

지역개발사업(장수 이천오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공사 완료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8(2022.1.14.)호, 제2023-367(2023.12.22.)호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장수 이천오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 5.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가. 명 칭 : 장수 이천오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1207번지 일원

2. 시 행 자 : 장수군수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합	계	8,513	
관	광 문 화 시 설	8,513	

4. 준공일자 : 2023. 12. 19. *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사업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1	공공편의시설 (도로)	계남면 호덕리 1207번지 일원	7,430	장수군 귀속
2	건축 (편의시설)		650	
3	녹지		433	

6.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문화관광과(063-35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84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5월 3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0-71호
- ② 법 인 명 : 사단법인 묘연
- ③ 대 표 자 : 구지은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죽성로 14, 2층 묘연쉼터(죽성동)
- ⑤ 변경사항 : 정관변경(제17조, 제23조)
- ⑥ 허가일자 : 2024. 4. 30.

※ 기타 문의사항은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 김미수(280-340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지시사항

◇ 2024. 4. 25.(목) 16:3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4-1 9	중대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여전히 작업 중 사망사고('24년 8건 /50인 미만 5건)가 발생하고 있음 ○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조치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군과 연계하여 도내 기업체(특히 50인 미만)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표평가(4.30.)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 발표 이후에도 매주 점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산자부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최종 발표 시까지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탄소바이오산업과)</p> ○ 민생 특별대책 후속조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장들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4.23.발표)' 실천을 위해 민생 특별대책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기 바라며, - 또한, 민생 특별대책과 연계된 2024년 제1회 추경 예정이므로, 실국에서는 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협력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전북대에 이어 원광대가 2024년 글로벌대학에 예비지정(4.16.) 되었으므로, 원광대가 최종 본지정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교육협력추진단)</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국민연금 역대 최대 수익률 성과 홍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13.59%(잠정)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통해 성과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 또한,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 등으로 우리도의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3</th> <th>'22</th> <th>'21</th> <th>'20</th> <th>'19</th> <th>'18</th> <th>'17 (전주이전)</th> </tr> </thead> <tbody> <tr> <td>수익률 (%)</td> <td>13.59 (잠정)</td> <td>-8.22</td> <td>10.77</td> <td>9.7</td> <td>11.31</td> <td>-5.9</td> <td>7.26</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대변인, 금융사회적경제과)</p>	구분	'23	'22	'21	'20	'19	'18	'17 (전주이전)	수익률 (%)	13.59 (잠정)	-8.22	10.77	9.7	11.31	-5.9	7.26
		구분	'23	'22	'21	'20	'19	'18	'17 (전주이전)									
		수익률 (%)	13.59 (잠정)	-8.22	10.77	9.7	11.31	-5.9	7.26									
		<p>○ 도정 혁신을 위한 청원 역량 강화 분위기 적극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장 및 과장들은 직원들에게 업무 지휘뿐만 아니라,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직 전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p>○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노고 격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p>○ 도정 성과 홍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으로 전북자치도가 선정되었음 - 이번 수상 성과는 전북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향후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기업유치지원실, 대변인)</p>																		
<p>○ 농어가 지원정책 합리화를 위한 조례 및 기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큼에 따라 농어가소득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어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및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p>																		

익산시 고시 제2024-85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 등의 승인·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72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4. 5. 3.

1.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대학 (원광대학교)	익산시 신동 272번지 일원	838,263	-	838,263	79.4.24.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원광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8,263	-	838,263	136,017.76	감)763.50	135,254.26	553,189.21	감)2,897.18	550,292.03
교사시설지	481,098	-	481,098	132,551.21	감)763.50	131,787.71	550,879.28	감)2,897.18	547,982.10
운동시설지	49,190	-	49,190	-	-	-	-	-	-
조경시설지	29,860	-	29,860	-	-	-	-	-	-
교통시설지	143,866	-	143,866	773.71	-	773.71	683.22	-	683.22
기타시설지	76,462	-	76,462	2,692.84	-	2,692.84	1,626.71	-	1,626.71
녹 지	57,787	-	57,787	-	-	-	-	-	-

나.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1) 노후화 된 제2미술관 및 제2미술관화장실 폐지
- 2) 제2미술관 및 제2미술관화장실 폐지 따른 대학원교육관 등 기존시설 시설번호 변경

라.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 사 사 설 지	1-1	1-1	소방 행정관	소방 행정관				0/2	교육연 구시설	372.00	-	372.00	502.00	-	502.00
	1-2	1-2	창업관	창업관				0/1	가마실	240.00	-	240.00	240.00	-	240.00
	1-3	1-3	사회관	사회관				1/5	강의실	1,057.07	-	1,057.07	5,340.02	-	5,340.02
	1-4	1-4	제2 사회관	제2 사회관				1/4	교육연 구시설	694.20	-	694.20	3,056.10	-	3,056.10
	1-5	1-5	인문관	인문관				1/5	교육연 구시설	1,654.00	-	1,654.00	8,230.00	-	8,230.00
	1-6	1-6	조소관	조소관				1/3	교육연 구시설	592.00	-	592.00	2,048.00	-	2,048.00
	1-7	1-7	도예관	도예관				0/3	교육연 구시설	572.09	-	572.09	1,716.27	-	1,716.27
	1-8	1-8	도예과 가마실	도예과 가마실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36.84	-	236.84	218.40	-	218.40
	1-9	1-9	전통 가마실	전통 가마실				0/1	교육연 구시설	76.84	-	76.84	76.84	-	76.84
	1-10	1-10	교학관	교학관				0/5	학교	657.65	-	657.65	3,259.90	-	3,259.90
	1-11	1-11	원광 디지털 대학교 (별관)	원광 디지털 대학교 (별관)				0/3	교육시설	281.40	-	281.40	844.20	-	844.20
	1-12	1-12	원광 디지털 대학교 (본관)	원광 디지털 대학교 (본관)				0/3	교육시설	495.87	-	495.87	1,487.61	-	1,487.61
	1-13	1-13	정진관	정진관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61.20	-	661.20	661.20	-	661.20
	1-14	1-14	경상관	경상관				0/4	교육시설	1,167.70	-	1,167.70	4,644.20	-	4,644.20
	1-15	1-15	경상 신관	경상 신관				1/3	교육연 구시설	336.25	-	336.25	1,081.65	-	1,081.65
	1-16	1-16	미술관	미술관				0/5	교육연 구시설	1,277.20	-	1,277.20	5,521.54	-	5,521.54
	1-17	1-17	새 천년관	새 천년관				1/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719.89	-	1,719.89	9,289.90	-	9,289.90
	1-18	1-18	생활 과학관	생활 과학관				1/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83.58	-	1,383.58	6,779.73	-	6,779.73
	1-19	1-19	학생 지원관	학생 지원관				1/7	도서관, 학교	2,151.50	-	2,151.50	13,610.36	-	13,610.36
	1-20	1-20	공공 정책관	공공 정책관				0/4	법학관 (교사)	765.50	-	765.50	3,039.29	-	3,039.29
	1-21	1-21	서예관	서예관				0/3	교육시설	717.35	-	717.35	2,113.11	-	2,113.11
	1-22	-	제2 미술관	-				0/4	교육시설	715.24	감)715.24	-	2,848.92	감)2,848.92	-
	1-23	1-22	대학원 교육관	대학원 교육관				0/5	학교	517.48	-	517.48	2,492.89	-	2,492.89
	1-24	1-23	공학관	공학관				0/5	대학교	5,349.77	-	5,349.77	25,955.31	-	25,955.31
	1-25	1-24	자연 과학관	자연 과학관				1/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525.60	-	2,525.60	12,863.50	-	12,863.50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 사 시 설 지	1-26	1-25	자동차 공학 실습관	자동차 공학 실습관				1/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71.04	-	271.04	542.08	-	542.08
	1-27	1-26	공학 교육 혁신관	공학 교육 혁신관				0/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78.45	-	878.45	1,722.05	-	1,722.05
	1-28	1-27	생명 자원 과학관	생명 자원 과학관				0/5	학교	1,494.38	-	1,494.38	7,827.90	-	7,827.90
	1-29	1-28	생자대 실험실	생자대 실험실				0/2	교육연 구시설 (농대 실험실)	660.00	-	660.00	990.00	-	990.00
	1-30	1-29	창업 지원관	창업 지원관				0/4	교육연 구시설	902.16	-	902.16	3,468.06	-	3,468.06
	1-31	1-30	약학관	약학관				1/5	E.L.실	1,173.00	-	1,173.00	6,146.50	-	6,146.50
	1-32	1-31	사범관	사범관				1/5	사범대학	1,717.08	-	1,717.08	9,017.86	-	9,017.86
	1-33	1-32	제생 의세관	제생 의세관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94.70	-	494.70	931.50	-	931.50
	1-34	1-33	예술 회관	예술 회관				0/2	교육연 구시설	2,000.00	-	2,000.00	3,000.00	-	3,000.00
	1-35	1-34	60주년 기념관	60주년 기념관				1/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803.59	-	2,803.59	8,773.09	-	8,773.09
	1-36	1-35	체육 교육관	체육 교육관				1/2	교육연 구시설	1,071.26	-	1,071.26	2,350.81	-	2,350.81
	1-37	1-36	한의 전문관	한의 전문관				1/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155.26	-	1,155.26	6,738.70	-	6,738.70
	1-38	1-37	한의원	한의원				0/4	교육시설 (한의 대학)	1,615.04	-	1,615.04	5,842.78	-	5,842.78
	1-39	1-38	한방 병원	한방 병원				1/4	한방병원	1,568.25	-	1,568.25	6,123.29	-	6,123.29
	1-40	1-39	의학관	의학관				0/5	교육연 구시설	2,551.00	-	2,551.00	13,689.70	-	13,689.70
	1-41	1-40	의과대 학병원 (신관)	의과대 학병원 (신관)				1/6	의료시설 (병원)	2,406.25	-	2,406.25	9,608.25	-	9,608.25
	1-42	1-41	의과대 학병원 (본관)	의과대 학병원 (본관)				1/9	의료시설	6,472.12	-	6,472.12	33,038.94	-	33,038.94
	1-43	1-42	원광대 학병원 (교수 연구동)	원광대 학병원 (교수 연구동)				0/8	의료시설 제1종 근생	2,300.00	-	2,300.00	14,300.00	-	14,300.00
	1-44	1-43	제2 치학관	제2 치학관				1/4	교육연 구시설	1,762.37	-	1,762.37	5,799.47	-	5,799.47
	1-45	1-44	치의관	치의관				1/4	치과대학	1,861.30	-	1,861.30	7,780.54	-	7,780.54
1-46	1-45	원광 대학 병원 (외래 3관)	원광 대학 병원 (외래 3관)				1/4	의료시설	904.00	-	904.00	3,795.00	-	3,795.00	
1-47	1-46	멀티 미디어 센터	멀티 미디어 센터				1/3	교육연 구시설	1,558.80	-	1,558.80	5,778.37	-	5,778.37	
1-48	1-47	학림관	학림관				0/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645.18	-	1,645.18	12,285.78	-	12,285.78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 기 본 시 설	1-49	1-48	보건관	보건관				1/5	교육연구 구시설	2,143.90	-	2,143.90	11,566.80	-	11,566.80
	1-50	1-49	예능관	예능관				1/3	기숙사	548.40	-	548.40	1,893.78	-	1,893.78
	1-51	1-50	문화관	문화관				0/5	교육연구 시설 및 제1종 근생	1,025.12	-	1,025.12	4,736.60	-	4,736.60
	1-52	1-51	미래관	미래관				0/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96.69	-	396.69	1,322.30	-	1,322.30
	1-53	1-52	본관	본관				0/3	교육연구 시설 및 제2종 근생	846.28	-	846.28	2,512.40	-	2,512.40
	1-54	1-53	도서관	도서관				0/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28.93	-	528.93	2,016.54	-	2,016.54
	1-55	1-54	법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				1/5	교육연구 구시설	1,680.00	-	1,680.00	7,850.00	-	7,850.00
	1-56	1-55	중앙 도서관 (신관)	중앙 도서관 (신관)				0/4	교육연구 구시설	3,573.00	-	3,573.00	14,142.00	-	14,142.00
	1-57	1-56	원광 보건 대학 WM관	원광 보건 대학 WM관				0/4	교육연구 시설, 제1,2종 근생	1,480.66	-	1,480.66	3,746.63	-	3,746.63
	1-58	1-57	권역 외상 (응급) 센터	권역 외상 (응급) 센터				1/8	의료시설 교육연구 구시설, 제1,2종 근생	3,100.00	-	3,100.00	19,500.00	-	19,500.00
	1-59	1-58	프라이 관	프라이 관				1/5	교육연구 구시설	2,668.58	-	2,668.58	12,116.17	-	12,116.17
	1-60	1-59	도시 대장간 (도시 공학부 실습장)	도시 대장간 (도시 공학부 실습장)				0/1	교육연구 구시설	210.00	-	210.00	210.00	-	210.00
	1-61	1-60	치과대 학병원	치과대 학병원				0/4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제1종 근생	1,600.00	-	1,600.00	5,500.00	-	5,500.00
	1-62	1-61	원광 보건 대학교 정문 캐노피	원광 보건 대학교 정문 캐노피				0/1	교육연구 구시설	57.00	-	57.00	57.00	-	57.00
	1-63	1-62	농업계 학과 실습장	농업계 학과 실습장				0/1	교육연구 구시설	1,000.00	-	1,000.00	1,000.00	-	1,000.00
소계									85,342.01	감)715.24	85,626.77	375,641.83	감)2,848.92	372,792.91	
지 원 시 설	2-1	2-1	승리관	승리관				0/2	교육연구 구시설	2,125.50	-	2,125.50	2,523.00	-	2,523.00
	2-2	2-2	체조 연습장	체조 연습장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38.08	-	838.08	838.08	-	838.08
	2-3	2-3	중앙 도서관	중앙 도서관				1/7	도서관	1,990.00	-	1,990.00	13,200.00	-	13,200.00
	2-4	2-4	대학 본부 (본관)	대학 본부 (본관)				1/5	대학본부	1,537.63	-	1,537.63	5,524.34	-	5,524.34
	2-5	2-5	공공 정책관 별관	공공 정책관 별관				0/1	교육시설	444.00	-	444.00	444.00	-	444.00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지원 시설	2-6	2-6	구 체육관	구 체육관				0/2	체육관	1,983.47	-	1,983.47	3,305.78	-	3,305.78
	2-7	2-7	학생 회관	학생 회관				2/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52.67	-	3,652.67	17,023.84	-	17,023.84
	2-8	2-8	승산 기념관	승산 기념관				1/3	교육연구 구시설, 식당	1,717.41	-	1,717.41	5,371.57	-	5,371.57
	2-9	2-9	문화 체육관	문화 체육관				1/3	교육시설 (체육관)	4,461.31	-	4,461.31	9,273.24	-	9,273.24
	2-10	2-10	학생 회관	학생 회관				1/3	교육연구 시설 제1,2층 근생	1,036.44	-	1,036.44	4,001.16	-	4,001.16
	2-11	2-11	휴게실 (원광보건대학)	휴게실 (원광보건대학)				0/1	교육연구 구시설	100.00	-	100.00	100.00	-	100.00
	소계									19,886.51	-	19,886.51	61,605.01	-	61,605.01
연구 시설	3-1	3-1	글로벌 창업 지원관	글로벌 창업 지원관				0/3	교육연구 구시설	735.29	-	735.29	1,946.67	-	1,946.67
	소계									735.29	-	735.29	1,946.67	-	1,946.67
교사 시설 지	4-1	4-1	외국어 학습관 (기숙사)	외국어 학습관 (기숙사)				1/9	공동주택	1,071.09	-	1,071.09	8,831.57	-	8,831.57
	4-2	4-2	학림관 (기숙사)	학림관 (기숙사)				1/15	기숙사	782.70	-	782.70	11,693.91	-	11,693.91
	4-3	4-3	사은관 (기숙사)	사은관 (기숙사)				1/4	기숙사	635.25	-	635.25	2,738.73	-	2,738.73
	4-4	4-4	개벽관 (기숙사)	개벽관 (기숙사)				1/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454.09	-	2,454.09	5,582.45	-	5,582.45
	4-5	4-5	청운관 (기숙사)	청운관 (기숙사)				1/4	기숙사	674.51	-	674.51	3,020.94	-	3,020.94
	4-6	4-6	삼동관 (기숙사)	삼동관 (기숙사)				1/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91.27	-	591.27	5,589.43	-	5,589.43
	4-7	4-7	용화관 (기숙사)	용화관 (기숙사)				0/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00.86	-	600.86	3,996.23	-	3,996.23
	4-8	4-8	보은관 (기숙사)	보은관 (기숙사)				1/13	교육연구 구시설	727.32	-	727.32	10,126.80	-	10,126.80
	4-9	4-9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기숙사)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기숙사)				1/5	기숙사	700.00	-	700.00	4,700.00	-	4,700.00
	4-10	4-10	학군단	학군단				1/3	교사 (학군단)	1,035.86	-	1,035.86	3,043.76	-	3,043.76
	4-11	4-11	박물관	박물관				1/4	박물관	1,872.00	-	1,872.00	6,047.19	-	6,047.19
	4-12	4-12	제1호 산학협력관	제1호 산학협력관				0/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69.44	-	469.44	927.55	-	927.55
	4-13	4-13	장래 문화원	장래 문화원				1/4	의료시설	1,599.65	-	1,599.65	4,981.95	-	4,981.95
	4-14	4-14	후생 복지관1	후생 복지관1				0/5	교육연구 구시설	2,000.00	-	2,000.00	10,000.00	-	10,000.00
	4-15	4-15	행복 기숙사	행복 기숙사				1/7	교육연구 구시설	1,330.42	-	1,330.42	8,116.08	-	8,116.08
소계									16,544.46	-	16,544.46	89,396.59	-	89,396.59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 사 시 설 지	5-1	5-1	조소 별관	조소 별관				0/1	교육연 구시설	560.00	-	560.00	560.00	-	560.00
	5-2	5-2	자원재 생센터	자원재 생센터				0/1	교육연 구시설	225.00	-	225.00	225.00	-	225.00
	5-3	5-3	미술대 학창고	미술대 학창고				0/1	교육연 구시설	176.40	-	176.40	176.40	-	176.40
	5-4	5-4	봉황각	봉황각				0/2	휴게실	175.20	-	175.20	294.70	-	294.70
	5-5	5-5	본관 물품 보관소	본관 물품 보관소				0/2	창고	438.80	-	438.80	875.15	-	875.15
	5-6	5-6	공공 정책관 창고	공공 정책관 창고				0/1	교육시설	43.53	-	43.53	43.53	-	43.53
	5-7	5-7	야외 화장실	야외 화장실				0/1	교육연 구시설	98.34	-	98.34	91.72	-	91.72
	5-8	-	제2 미술관 화장실	-				0/1	화장실	48.26	감)48.26	-	48.26	감)48.26	-
	5-9	5-8	운동장 화장실	운동장 화장실				0/1	화장실	39.96	-	39.96	39.96	-	39.96
	5-10	5-9	생자대 창고	생자대 창고				0/1	창고	198.00	-	198.00	198.00	-	198.00
	5-11	5-10	농기계 창고	농기계 창고				0/1	교육연 구시설	84.00	-	84.00	84.00	-	84.00
	5-12	5-11	비품 창고	비품 창고				0/2	교육연 구시설	600.00	-	600.00	1,200.00	-	1,200.00
	5-13	5-12	동식물 전시관	동식물 전시관				0/3	교육연 구시설	500.00	-	500.00	1,200.00	-	1,200.00
	5-14	5-13	사범대 학부속 유치원	사범대 학부속 유치원				1/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75.09	-	675.09	1,429.91	-	1,429.91
	5-15	5-14	평생 교육원	평생 교육원				1/4	교육연 구시설	1,690.82	-	1,690.82	7,427.01	-	7,427.01
	5-16	5-15	변전소 관리실	변전소 관리실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1.05	-	131.05	131.05	-	131.05
	5-17	5-16	주 변전실	주 변전실				0/1	교육연 구시설	570.00	-	570.00	570.00	-	570.00
	5-18	5-17	원광문 화복지 센터	원광문 화복지 센터				2/5	교육연구 시설 (복지 시설)	840.50	-	840.50	5,246.50	-	5,246.50
	5-19	5-18	현협의 집	현협의 집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50.45	-	150.45	150.45	-	150.45
	5-20	5-19	수위실	수위실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3.14	-	23.14	23.14	-	23.14
	5-21	5-20	물품 보관소	물품 보관소				0/1	교육연 구시설	1,000.00	-	1,000.00	1,500.00	-	1,500.00
	5-22	5-21	부품 창고	부품 창고				0/1	창고	430.00	-	430.00	430.00	-	430.00
	5-23	5-22	재활용 품창고	재활용 품창고				0/1	창고시설	130.00	-	130.00	130.00	-	130.00
	5-24	5-23	카페 테리아	카페 테리아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66.40	-	166.40	166.40	-	166.40
	5-25	5-24	코로나 19 검사소1	코로나 19 검사소1				0/1	교육연 구시설	38.00	-	38.00	38.00	-	38.00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 ²)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사 시설 지	5-26	5-25	코로나 19 검사소2	코로나 19 검사소2				0/1	교육연 구시설	10.00	-	10.00	10.00	-	10.00
	소계									9,042.94	감)48.26	8,994.68	22,289.18	감)48.26	22,240.92
	계				481,098	-	481,098	최고 높이 15층 이하		132,551.21	감)763.5 0	131,787.71	550,879.28	감)2,897.1 8	547,982.10
운동 시설 지	6-1	6-1	소 운동장	소 운동장	17,465	-	17,465								
	6-2	6-2	대 운동장	대 운동장	24,897	-	24,897								
	6-3	6-3	테니스 장	테니스 장	1,98	-	1,989								
	6-4	6-4	테니스 장	테니스 장	2,076	-	2,076								
	6-5	6-5	테니스 장	테니스 장	2,763	-	2,763								
	계				49,190	-	49,190								
조경 시설 지	7-1	7-1	보건대 본부 광장	보건대 본부 광장	4,063	-	4,063								
	7-2	7-2	수덕호	수덕호	13,502	-	13,502								
	7-3	7-3	봉황상 광장	봉황상 광장	3,363	-	3,363								
	7-4	7-4	송산 기념 광장	송산 기념 광장	8,932	-	8,932								
	계				29,860	-	29,860								
교통 시설 지	8-1	8-1	정문 캐노피	정문 캐노피	-	-	-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6.20	-	46.20	9.10	-	9.10
	8-2	8-2	진입 광장	진입 광장	4,101	-	4,101								
	8-3	8-3	교통 광장	교통 광장	1,525	-	1,525								
	8-4	8-4	주차장	주차장	5,113	-	5,113								
	8-5	8-5	주차장	주차장	3,106	-	3,106								
	8-6	8-6	주차장	주차장	12,995	-	12,995								
	8-7	8-7	주차장	주차장	4,592	-	4,592								
	8-8	8-8	주차장	주차장	5,053	-	5,053								
	8-9	8-9	주차장	주차장	3,088	-	3,088								
	8-10	8-10	주차장	주차장	27,046	-	27,046								
	8-11	8-11	버스 승차 대기소	버스 승차 대기소	956	-	956	0/1	교육연 구시설 (버스 승차 대기소)	575.59	-	575.59	553.90	-	553.90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층수 (지하 / 지상)	용도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 시설 지	8-12	8-12	동문 게이트 캐노피	동문 게이트 캐노피	-	-	-	0/1	교육연 구시설	42.92	-	42.92	11.22	-	11.22
	8-13	8-13	병원 제1 진입로 캐노피	병원 제1 진입로 캐노피	-	-	-	0/1	교육연 구시설	41.00	-	41.00	41.00	-	41.00
	8-14	8-14	병원 제2 진입로 캐노피	병원 제2 진입로 캐노피	-	-	-	0/1	교육연 구시설	68.00	-	68.00	68.00	-	68.00
	-	-	도로	도로	76,291	-	76,291								
	계				143,866	-	143,866	최고 높이 1층 이하		773.71	-	773.71	683.22	-	683.22
기타 시설 지	9-1	9-1	중앙 도서관 광장	중앙 도서관 광장	4,750	-	4,750								
	9-2	9-2	노천 극장	노천 극장	2,247	-	2,247								
	9-3	9-3	자연 식물원	자연 식물원	10,256	-	10,256								
	9-4	9-4	화훼 실습 포장	화훼 실습 포장	2,740	-	2,740								
	9-5	9-5	약초원	약초원	4,642	-	4,642								
	9-6	9-6	채소 실습 포장	채소 실습 포장	5,730	-	5,730								
	9-7	9-7	수목원	수목원	41,082	-	41,082								
	9-8	9-8	자연 식물원 관리사	자연 식물원 관리사	-	-	-	0/1	교육연 구시설	120.00	-	120.00	120.00	-	120.00
	9-9	9-9	진통 경자	진통 경자	-	-	-	0/1	교육연 구시설	30.00	-	30.00	30.00	-	30.00
	9-10	9-10	닥터헬 기이착 륙장및 계류장	닥터헬 기이착 륙장및 계류장	3,010	-	3,010	0/2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2,011.65	-	2,011.65	705.20	-	705.20
	9-11	9-11	폐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2,005	-	2,005	1/1	병원	531.19	-	531.19	771.51	-	771.51
계				76,462	-	76,462	최고 높이 2층 이하		2,692.84	-	2,692.84	1,626.71	-	1,626.71	
녹지	-	-	녹지	녹지	57,787	-	57,787								
	계				57,787	-	57,787								
총계				838,263	-	838,263			136,017.76	감763.50	135,254.26	553,189.21	감2,897.18	550,292.03	

3. 익산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도면 : 실음생략

익산시 고시 제2024-8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범창산업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범창산업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4. 5. 3.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왕궁2	(유)범창산업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109,607	감)6,605	103,012	익산시 고시 제1999-57호 (1999.11.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변경	왕궁2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109,607㎡ → 103,012㎡ (감 :6,605㎡)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계의 일부 조정과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왕궁2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100%	109,617	익산시 고시 제1999-57호 (1999.11.8)	
변경	왕궁2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100%	103,012	익산시 고시 제1999-57호 (1999.11.8)	

2)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왕궁2	개발진흥지구	109,607㎡ → 103,012㎡ (감 :6,605㎡)	지역 내 대규모 집포의 유지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계의 일부 조정과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9,617	감) 6,605	103,012	100.0	
공업용지	98,070	감) 46,750	51,320	49.8	
유통용지	-	증) 37,511	37,511	36.4	
녹지용지	10,481	감) 813	9,668	9.4	
공공시설용지	1,066	증) 3,447	4,513	4.4	도로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2	268	4,351	1	179	1,896	1	89	2,455	-	-	-
중 로	1	89	2,455	-	-	-	1	89	2,455	-	-	-
소 로	1	179	1,896	1	179	1,896	-	-	-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8.5	집산도로	89	왕궁면 동촌리 115 담	왕궁면 동촌리 117-4장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1	10.0	국지도도로	179	왕궁면 동촌리 117-4 장	왕궁면 도순리 316-9장	일반 도로	-	금회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 원 : 18.5m - 연 장 : 89m 	새로 설치되는 대규모 점포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 원 : 10.0m - 연 장 : 179m 	단지내부와 외부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개설하여 익산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토록 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업용지(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A	75,033	1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75,033	
	B	23,037	1	왕궁면 동촌리 113-4번지 일원	23,037	
변경	A	51,320	1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51,320	

2) 유통용지(신설)

구분	가 구		획 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신설	B	37,511	1	왕궁면 동촌리 113-4번지 일원	37,511	

3) 녹지용지(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A	4,431	2	왕궁면 도순리 169-69번지 일원	2,966	
			3	왕궁면 동촌리 117-7번지 일원	1,465	
	B	6,050	2	왕궁면 동촌리 113-4번지 일원	6,050	
변경	C	9,668	1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688	
			2	왕궁면 도순리 169-133번지 일원	703	
			3	왕궁면 동촌리 113-4번지 일원	4,410	
			4	왕궁면 도순리 316-9번지 일원	3,867	

4)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비고
	번호	면적(m ²)	번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C	1,066	1	왕궁면 동촌리 117-8번지 일원	1,066	
변경	D	4,513	1	왕궁면 동촌리 117-4번지 일원	2,455	
			2	왕궁면 동촌리 117-4번지 일원	1,896	
			3	왕궁면 도순리 169-213번지 일원	162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A1 B1	A1	용도	허용용도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17호의공장 및 부대시설 (시멘,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KSIC 233))	
			변경	○건축법시행령 별표1.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시멘,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KSIC 233)) ○건축법시행령 별표1.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B1	용도	허용용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대규모 점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A2 A3 B2	C1 C2 C3 C4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1.조경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바.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외부에 대하여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단지 내 도로용지에 대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을 금함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참조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용지를 일반인이 통행 시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경계석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형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함 	
변경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외부에 대하여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단지 내 물품 반입과 반출을 위한 대형차량의 동선을 별도 계획하여 방문객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차량통행에 안전을 기함 	교통처리에 관한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용지를 일반인이 통행 시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경계석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형차량의 출입동선을 별도로 계획하며, 교통표지판을 설치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도면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4-80호

남원 광치 제1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남원 광치 제1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광치 제1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24년 05월 03일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남원 광치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성 명 : 남원시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 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균형발전
- 사업의 개요 “금회 변경”
 - 농공단지 면적 : 146,838㎡ → 145,533㎡(감 1,305㎡)
 - 산업시설용지 : 123,608㎡ → 122,787㎡(감 821㎡)
 - 지원시설용지 : 3,556㎡ → 3,620㎡(증 64㎡)
 - 공공시설용지 : 19,674㎡ → 19,126㎡(감 548㎡)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39,069㎡ → 145,533㎡(증 6,464㎡)
 - 지구단위계획 수립 : 145,533㎡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치동 195번지 일원
 - 면 적 : 146,838㎡ → 145,533㎡(감 1,305㎡)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공영개발
 - 시행기간 : 1991년 06월 19일 ~ 1992년 06월 28일
 - 금회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실시계획 변경승인일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8. 관련 도서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치)	남원시 광치동 195번지 일원	139,069	증) 6,464	145,533	전라북도고시 제1991-179호 (1991.06.28.)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245	광치동 195-12도	광치동 195-12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0	광치동 195-12도	광치동 195-12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9	광치동 195-12도	용정동 83-3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66	광치동 195-12도	광치동 195-12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68	광치동 195-12도	광치동 195-12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208	광치동 195-34도	광치동 195-3장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용정동 83-7장	용정동 83-7장	일반도로	-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광치동 195-46 일원	-	증)4,473	4,473	금회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용정동 83-9 일원	-	증)2,104	2,104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광치동 195-4	-	증)782	782	금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산업1	산업1	62,421	1-1	8,191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1-2	4,408	
			1-3	16,874	
			1-4	7,084	
			1-5	10,574	
			1-6	7,375	
			1-7	7,915	
산업2	산업2	60,366	2-1	17,132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2	6,559	
			2-3	2,678	
			2-4	6,614	
			2-5	7,124	
			2-6	6,005	
			2-7	5,517	
			2-8	5,368	
			2-9	3,369	
지원1	지원1	3,620	1-1	3,620	대지의 분할 불가
수1	수1	782	1-1	782	대지의 분할 불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산업1 ~ 산업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색채	·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 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주조색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 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사용 - 강조색 : 제한없음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지원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 태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계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 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 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사용 - 강조색 : 제한없음 		

다. 공공시설용지(수도공급설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수1	용도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제1호 수도공급설비중 배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6,838	감) 1,305	145,533	100.0	
산업시설	소계	123,608	감) 821	122,787	84.4	
	산업시설	123,608	감) 821	122,787	84.4	
지원시설	소계	3,556	증) 64	3,620	2.5	
	지원시설	3,556	증) 64	3,620	2.5	
공공시설	소계	19,674	감) 548	19,126	13.1	
	도로	12,315	감) 548	11,767	8.1	
	녹지	6,577	-	6,577	4.5	
	수도공급설비	782	-	782	0.5	

㉓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도 : “계재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4 - 8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2호(2024.4.5.)로 결정(변경) 고시된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원시장
2024년 05월 03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기정	5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3-4호선변 (충정로)	18,900	1,575	12	전북고시 제1997-168호 (1997.5.13.)
변경	5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3-4호선변 (충정로)	15,000	1,575	12	전북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10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1-10호선변	34,920	2,910	12	전북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변경	10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1-10호선변	32,441	2,910	12	전북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2)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지구	· 면적변경 - 18,900㎡ → 15,000㎡ (감 3,900㎡)	· 근린공원 11 호의 면적증가 및 선형변경에 의해 경관지구 변경
10	경관지구	· 면적변경 - 34,920㎡ → 32,441㎡ (감 2,479㎡)	· 근린공원 11 호의 면적증가 및 선형변경에 의해 경관지구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중앙공원 (11호)	만인공원	근린공원	동충동 197-1번지 일원	51,300	증)31,335	82,635	전북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만인공원	· 시설명 : 중앙공원(11호) → 만인공원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 - 면 적 : 51,300㎡ → 82,635㎡ (증 31,335㎡)	·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에 만인의총과 남원성 복문을 연계한 생활권공원을 확장·조성하여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휴식공간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4-8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 고시된 향교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결정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4년 5월 3일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향교 공원	근린 공원	남원시 향교동 산19번지 일원	486,786	-	486,786	건설부 고시 제520호 (1963.08.26.)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 경)

시설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수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86,786	-	486,786	100.0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시설합계	84,342	감)3,066	81,276	16.7	11	-	11	-	-	-	-	-	-	
도로 및 광장	31,723	감)1,713	30,010	6.2	-	-	-	-	-	-	-	-	-	
조경시설	26,651	-	26,651	5.5	-	-	-	-	-	-	-	-	-	
운동시설	3,594	-	3,594	0.7	-	-	-	87	-	87	87	-	87	
교양시설	13,656	감)148	13,508	2.8	5	-	5	-	-	-	-	-	-	
편익시설	6,192	감)1,205	4,987	1.0	3	-	3	801	-	801	801	-	801	
휴양시설	2,307	-	2,307	0.5	1	-	1	280	-	280	280	-	280	
관리시설	219	-	219	0.0	2	-	2	219	-	219	219	-	219	
녹지	402,444	증)3,066	405,510	83.3	-	-	-	-	-	-	-	-	-	

3.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변경)

가.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동수			건물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86,786	-	486,786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공원시설합계			84,342	감)3,066	81,276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도로 및 광장	기정	변경	소계	31,723	감)1,713	30,010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1-1	1-1	보행자도로	61	-	61	-	-	-	-	-	-	-	-	-	
	1-2	1-2	보행자도로	247	-	247	-	-	-	-	-	-	-	-	-	
	1-3	1-3	보행자도로	275	-	275	-	-	-	-	-	-	-	-	-	
	1-4	1-4	보행자도로	64	-	64	-	-	-	-	-	-	-	-	-	
	1-5	1-5	보행자도로	920	-	920	-	-	-	-	-	-	-	-	-	
	1-6	1-6	보행자도로	608	-	608	-	-	-	-	-	-	-	-	-	
	1-7	1-7	보행자도로	289	-	289	-	-	-	-	-	-	-	-	-	
	1-8	1-8	보행자도로	231	-	231	-	-	-	-	-	-	-	-	-	
	1-9	1-9	보행자도로	314	-	314	-	-	-	-	-	-	-	-	-	
도로 및 광장	1-10	1-10	보행자도로	197	-	197	-	-	-	-	-	-	-	-	-	
	1-11	1-11	보행자도로	1,143	-	1,143	-	-	-	-	-	-	-	-	-	
	2-1	2-1	산책로	2,689	-	2,689	-	-	-	-	-	-	-	-	-	
	2-2	2-2	산책로	1,861	-	1,861	-	-	-	-	-	-	-	-	-	
	2-3	2-3	산책로	1,278	-	1,278	-	-	-	-	-	-	-	-	-	
	2-4	2-4	산책로	933	-	933	-	-	-	-	-	-	-	-	-	
	2-5	2-5	산책로	187	-	187	-	-	-	-	-	-	-	-	-	
	2-6	2-6	산책로	690	감)488	202	-	-	-	-	-	-	-	-	-	
	2-7	2-7	산책로	575	증)560	1,135	-	-	-	-	-	-	-	-	-	
	2-8	2-8	산책로	948	감)126	822	-	-	-	-	-	-	-	-	-	
	2-9	2-9	산책로	2,203	-	2,203	-	-	-	-	-	-	-	-	-	
	-	2-10	산책로	-	증)252	252	-	-	-	-	-	-	-	-	-	신설
2-10	2-11	진입광장	3,545	-	3,545	-	-	-	-	-	-	-	-	-		
2-11	2-12	중앙광장	8,069	-	8,069	-	-	-	-	-	-	-	-	-		
2-12	2-13	쉼터광장	4,396	감)1,911	2,485	-	-	-	-	-	-	-	-	-		
소계			26,651	-	26,651	-	-	-	-	-	-	-	-	-		
조경 시설	3-1	3-1	음수대	111	-	111	-	-	-	-	-	-	-	-	-	
	3-2	3-2	음수대	229	-	229	-	-	-	-	-	-	-	-	-	
	3-3	3-3	잔디밭	15,699	-	15,699	-	-	-	-	-	-	-	-	-	
	3-4	3-4	잔디밭	2,175	-	2,175	-	-	-	-	-	-	-	-	-	
	3-5	3-5	잔디밭	4,307	-	4,307	-	-	-	-	-	-	-	-	-	
	3-6	3-6	잔디밭	461	-	461	-	-	-	-	-	-	-	-	-	
	3-7	3-7	연못	2,325	-	2,325	-	-	-	-	-	-	-	-	-	
	3-8	3-8	연못	1,344	-	1,344	-	-	-	-	-	-	-	-	-	
소계			3,594	-	3,594	-	-	-	-	-	-	-	-	-		
운동 시설	4-1	4-1	운동시설	1,753	-	1,753	-	-	-	-	-	-	-	-	-	
	4-2	4-2	운동시설	612	-	612	-	-	-	-	-	-	-	-	-	
	4-3	4-3	운동시설	1,229	-	1,229	-	-	-	-	-	-	-	-	-	
	소계			13,656	감)148	13,508	-	-	-	-	-	-	-	-	-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동수			건물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양 시설	5-1	5-1	탑	146	-	146	-	-	-	-	-	-	-	-	-	-
	5-2	5-2	탑	48	-	48	-	-	-	-	-	-	-	-	-	-
	5-3	5-3	탑	35	-	35	-	-	-	-	-	-	-	-	-	-
	5-4	5-4	순의 탑	465	-	465	-	-	-	-	-	-	-	-	-	-
	5-5	5-5	중수비	69	-	69	-	-	-	-	-	-	-	-	-	-
	5-6	5-6	역사유물기념관	290	-	290	1	-	1	290	-	290	290	-	290	-
	5-7	5-7	총의문	93	-	93	1	-	1	93	-	93	93	-	93	-
	5-8	5-8	성인문	68	-	68	1	-	1	68	-	68	68	-	68	-
	5-9	5-9	충렬사	211	-	211	1	-	1	211	-	211	211	-	211	-
	5-10	5-10	만인의 충	71	-	71	-	-	-	-	-	-	-	-	-	-
	5-11	5-11	만인의 충 정문	139	-	139	1	-	1	139	-	139	139	-	139	-
	5-12	5-12	탄소저감식물 존	12,021	감)148	11,873	-	-	-	-	-	-	-	-	-	-
소계				6,192	감)1,205	4,987	-	-	-	-	-	-	-	-	-	-
편의 시설	6-1	6-1	주차장	3,465	-	3,465	-	-	-	-	-	-	-	-	-	-
	6-2	6-2	주차장	1,066	감)883	183	-	-	-	-	-	-	-	-	-	-
	6-3	-	주차장	777	감)777	-	-	-	-	-	-	-	-	-	-	폐지
	6-4	6-3	화장실	92	-	92	1	-	1	92	-	92	92	-	92	-
	6-5	6-4	화장실	166	-	166	1	-	1	166	-	166	166	-	166	-
	6-6	6-5	전망대	626	-	626	1	-	1	22	-	22	22	-	22	-
	-	6-6	녹지연결로	-	증)455	455	-	-	-	-	-	-	-	-	-	신설
소계				2,307	-	2,307	-	-	-	-	-	-	-	-	-	
휴양 시설	7-1	7-1	팔각정	87	-	87	1	-	1	87	-	87	87	-	87	-
	7-2	7-2	숲속쉼터	2,220	-	2,220	-	-	-	-	-	-	-	-	-	-
공원 관리 시설	8-1	8-1	공원관리 사무실	219	-	219	2	-	2	219	-	219	219	-	219	-
기타 시설	녹지			402,444	증)3,066	405,510	-	-	-	-	-	-	-	-	-	-

②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49,87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환경과)
 - 나.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비 : 6,000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합 계				146,924	49,870					
1	용정동	269	전	586	586	김종희	남원시 요천로 1300, 103동 1404호			
2	용정동	269-2	하	415	69	남원시				
3	용정동	271	하	2,014	178	남원시				
4	용정동	271-1	전	744	744	김제곤	남원시 향교동 48			
5	용정동	271-6	하	31	31	남원시				
6	용정동	271-7	전	289	289	남원시				
7	용정동	273-1	도	56	56	국(건설교통부)				
8	용정동	273-2	전	72	72	박근규	남원시 동림로 129, 8동 701호			
9	용정동	273-3	전	565	565	남원시				
10	용정동	273-4	전	122	122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1	용정동	273-5	전	172	172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2	용정동	273-6	전	192	192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3	용정동	273-7	전	47	47	남원시				
14	용정동	273-8	과	801	801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5	용정동	273-9	임	188	188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6	용정동	273-10	임	254	254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7	용정동	273-11	과	288	288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8	용정동	274-2	전	308	308	박근규	남원시 동림로 219, 8동 701호			
19	용정동	274-3	전	49	49	남원시				
20	용정동	275-1	도	684	684	남원시				
21	용정동	276	전	1,150	1,150	김익곤	남원군 남원읍 향교리 4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22	용정동	277	전	757	757	영천이씨금리 종중	남원시 금동 131			
23	용정동	278-1	전	627	627	남원시				
24	용정동	278-3	도	461	461	남원시				
25	용정동	279-1	전	373	373	남원시				
26	용정동	279-3	전	419	419	남원시				
27	용정동	280-2	전	208	208	남원시				
28	용정동	281	전	1,342	1,342	서종오	남원시 동림로 129, 1동 1003호			
29	용정동	281-1	전	221	221	남원시				
30	용정동	281-2	전	592	592	남원시				
31	용정동	281-3	전	2,209	2,209	남원시				
32	용정동	281-10	전	1,114	1,114	남원시				
33	용정동	760	도	35,458	3,882	국(건설부)				
34	용정동	764	구	357	202	국(농림부)				
35	용정동	산113	임	28,879	5,848	영천이씨금리 종중	남원시 금동 131			
36	용정동	산114-2	임	92	92	남원시				
37	용정동	산114-3	임	4	4	남원시				
38	용정동	산114-4	임	7	7	남원시				
39	용정동	산115-4	임	793	793	남원시				
40	용정동	산116-1	임	2,730	2,671	남원시				
41	용정동	산116-2	도	397	370	남원시				
42	용정동	산116-5	임	99	99	남원시				
43	용정동	산116-6	임	543	315	남원시				
44	용정동	산117-1	임	16,562	9,967	남원시				
45	용정동	산117-4	도	99	99	남원시				
46	용정동	산117-6	임	496	496	남원시				
47	용정동	산117-7	임	7,438	7,438	남원시				
48	향교동	501-1	전	109	101	남원시				
49	향교동	501-2	도	60	60	국(건설부)				
50	향교동	502	임	214	8	남원시				
51	향교동	503	도	1,478	268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52	향교동	503-3	임	26	26	남원시				
53	향교동	525-1	도	377	132	남원시				
54	향교동	525-2	전	307	193	남원시				
55	향교동	1007-1	도	2,945	235	국(건설부)				
56	향교동	1007-2	전	224	217	남원시				
57	향교동	1007-6	도	82	82	국(기획재정부)				
58	향교동	산15-8	도	99	95	남원시				
59	향교동	산15-1	임	29,699	1,002	전라북도 향교재단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			

남원시 고시 제2024-8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확정 결정되어 추진 중인 『남원의료원 그린리모델링 조성사업(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4년 5월 3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의료원 그린리모델링 조성사업(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98,562㎡(장례식장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34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죽동 20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사용승인시까지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9필지		230,739	98,562					
1	남원시 고죽	200	대	35,015	33,012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2	남원시 고죽	200-5	수	23	23	국(건교부)				
3	남원시 고죽	299-1	임	815	148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4	남원시 고죽	623-1	천	129,084	12	국(건교부)				
5	남원시 월락	248-2	대	571	571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6	남원시 월락	252	대	35,669	35,669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7	남원시 월락	252-1	대	28,272	28,272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8	남원시 월락	252-2	대	218	218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9	남원시 월락	622-43	구	1,072	637	국(농림부)				

김제시 고시 제2024-61호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시 공고 제2024-153호(2024.02.22.)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5월 3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번영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2호 광장 ~시청사거리	3,120	좌 170 우 9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상업지역 편측 및 양측
변경	4	번영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2호 광장 ~시청사거리	3,211.3	좌 170 우 9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상업지역 편측 및 양측
기정	5	번영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2호 광장 ~시청사거리	17,040	좌 620 우 80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준주거지역 편측 및 양측
변경	5	번영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2호 광장 ~시청사거리	17,204.1	좌 620 우 80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준주거지역 편측 및 양측
기정	6	백제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지도소삼거리 ~2호 광장	24,902.5	좌 1,010 우 1,05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상업지역 편측 및 양측
변경	6	백제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지도소삼거리 ~2호 광장	24,887.5	좌 1,010 우 1,05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상업지역 편측 및 양측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백제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지도소삼거리 ~2호 광장	8,866	좌 390 우 50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주거지역 편축 및 양축
변경	7	백제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지도소삼거리 ~2호 광장	8,871	좌 390 우 50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주거지역 편축 및 양축
기정	14	시청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만경사거리 ~요촌택지 개발지구	960	우 8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상업지역 편축
변경	14	시청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만경사거리 ~요촌택지 개발지구	1,056	우 80	12	전라북도 고시 제2019-213호 (19.09.06.)	상업지역 편축

2.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번영로변	• 시가지 경관지구 위치 변경	•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위치 변경
5	번영로변	• 시가지 경관지구 위치 변경	•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위치 변경
6	백제로변	• 시가지 경관지구 위치 변경	•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위치 변경
7	백제로변	• 시가지 경관지구 위치 변경	•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위치 변경
14	시청로변	• 시가지 경관지구 위치 변경	•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위치 변경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	25	주 간 선로	843	2호 광장	대로3-7	일반 도로	서주 우유	건설 제277호 (73.7.3)	
변경	대로	3	6	25	주 간 선로	843	2호 광장	대로3-7	일반 도로	서주 우유	건설 제277호 (73.7.3)	노선 위치 변경
기정	대로	3	7	25	주 간 선로	1,053	4호 광장	대로3-10	일반 도로	서주 우유	건설 제44호 (86.1.30)	
변경	대로	3	7	25	주 간 선로	1,053	4호 광장	대로3-10	일반 도로	서주 우유	건설 제44호 (86.1.30)	노선 위치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로	1,409	2호 광장 요촌동 70-15	대로3-3 교동 121-6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변경	중로	1	1	20~23	보조간선로	1,409	2호 광장 요촌동 70-15	대로3-3 교동 121-6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로	590	대로3-7 요촌동 371-24	중로1-6 교동 46-5	일반 도로		건설 제362호 (73.9.5)	
변경	중로	1	5	20	보조간선로	590	대로3-7 요촌동 371-20	중로1-6 교동 46-5	일반 도로		건설 제362호 (73.9.5)	노선 위치, 기점 지면 변경
기정	중로	1	11	20	보조간선로	657	대로1-2 교동 275-2	중로3-13 요촌동 423-3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변경	중로	1	11	20	보조간선로	657	대로1-2 교동 275-2	중로3-13 요촌동 423-3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로	799	중로1-1 요촌동 514-1	대로3-6 요촌동 371-2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변경	중로	2	1	15~17	보조간선로	799	중로1-1 요촌동 514-1	대로3-6 요촌동 371-2	일반 도로		건설 제277호 (73.7.3)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로	490	중로3-1 요촌동 212-2	중로3-4 요촌동 108-5	일반 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변경	중로	2	6	15	보조간선로	490	중로3-1 요촌동 212-2	중로3-4 요촌동 108-5	일반 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로	255	중로2-1 요촌동 272-37	중로2-6 요촌동 524-1	일반 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로	255	중로2-1 요촌동 272-37	중로2-6 요촌동 524-1	일반 도로		전북 제171호 (93.6.14)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중로	3	13	12	보조간선로	132	중로1-11	중로2-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중로	3	13	12~13	보조간선로	132	중로1-11	중로2-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소로	1	40	10	국지도로	85	대로3-6 요촌동 294-7	중로2-1 요촌동 372-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1	40	10~11	국지도로	85	대로3-6 요촌동 294-7	중로2-1 요촌동 372-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0	7~8	국지도로	282	대로3-6 요촌동 230-7	중로3-1 요촌동 255-15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2	10	7~8	국지도로	282	대로3-6 요촌동 230-7	중로3-1 요촌동 255-14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중점 지면 변경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90	중로1-5	중로1-1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190	중로1-5	중로1-1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2	4~6	국지도로	70	중로2-1 요촌동 374-4	소로3-26 요촌동 383-1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32	4~6	국지도로	70	중로2-1 요촌동 374-4	요촌동 376-4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중점 지번 변경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380	대로3-6	중로2-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42	6~7	국지도로	380	대로3-6	중로2-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소로	3	43	4~6	국지도로	334	소로3-42 요촌동 287-2	소로1-40 요촌동 274-18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43	4~6	국지도로	334	소로3-42 요촌동 524-76	소로1-40 요촌동 373-4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기중점 지번 변경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54	중로2-1	소로3-4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44	5~6	국지도로	54	중로2-1	소로3-4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소로	3	46	4~6	국지도로	232	대로3-6 요촌동 320-12	소로3-43 요촌동 288-9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46	4~6	국지도로	232	대로3-6 요촌동 320-12	소로3-43 요촌동 288-29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중점 지번 변경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113	소로3-42	소로3-46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47	6	국지도로	113	소로3-42	소로3-46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소로	3	49	4~6	국지도로	169	대로3-6 요촌동 236-5	소로3-50 요촌동 241-3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49	4~6	국지도로	169	대로3-6 요촌동 524-101	소로3-50 요촌동 238-4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기중점 지번 변경
기정	소로	3	50	6	일반도로	123	소로2-10	소로3-42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50	6	일반도로	123	소로2-10	소로3-42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소로	3	51	6	일반도로	183	대로3-6	중로1-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51	6	일반도로	183	대로3-6	중로1-1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소로	3	215	6	국지도로	110	중로1-5 요촌동 374-6	소로3-32 요촌동 374-3	일반 도로		전북 제210호 (2001.8.3.)	
변경	소로	3	215	4~6	국지도로	110	중로1-5 요촌동 374-6	소로3-32 요촌동 374-3	일반 도로		전북 제210호 (2001.8.3.)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16	6	국지도로	50	중로2-1	소로3-43	일반 도로		김제시 고시 제2002-33호 (2002.3.4.)	
변경	소로	3	216	6	국지도로	50	중로2-1	소로3-43	일반 도로		김제시 고시 제2002-33호 (2002.3.4.)	노선 위치 변경
기정	소로	3	336	6	국지도로	120	중로2-1 요촌동 410-3	중로3-13 요촌동 412-35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336	4~6	국지도로	120	중로2-1 요촌동 410-3	중로3-13 요촌동 412-35	일반 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기정	소로	3	397	95	국지도로	95	소로3-43	소로3-46	일반 도로		전라북도 고시 제2007-368호 (2007.12.28.)	
변경	소로	3	397	95	국지도로	95	소로3-43	소로3-46	일반 도로		전라북도 고시 제2007-368호 (2007.12.28.)	노선 위치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3-6	대로3-6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대로3-7	대로3-7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1-1	중로1-1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중로1-5	중로1-5	• 노선 위치 및 기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점 지번 변경
중로1-11	중로1-11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2-1	중로2-1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중로2-6	중로2-6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3-1	중로3-1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중로3-13	중로3-13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소로1-40	소로1-40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소로2-10	소로2-10	• 노선 위치 및 중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중점 지번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24	소로3-24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소로3-32	소로3-32	•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소로3-42	소로3-42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소로3-43	소로3-43	• 노선 위치 및 기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종점 지번 변경
소로3-44	소로3-44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소로3-46	소로3-46	•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종점 지번 변경
소로3-47	소로3-47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소로3-49	소로3-49	• 노선 위치 및 기종점 지번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기종점 지번 변경
소로3-50	소로3-50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소로3-51	소로3-51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소로3-215	소로3-215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소로3-216	소로3-216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소로3-336	소로3-336	•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및 폭원 변경
소로3-397	소로3-397	• 노선 위치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노선 위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	노외 주차장	요촌동 → 요촌동 383-12번지 일원	1,481	증)142.8	1,623.8	김제시 고시 제2002-33호 (2002.3.4.)	
변경	10	노외 주차장	요촌동 → 요촌동 273-5번지 일원	2,078	감)10.7	2,067.3	김제시 고시 제2005-40호 (2005.11.18.)	
변경	12	주차장	요촌동 277-7번지 일원 → 요촌동 277-15번지	434	감)12.9	421.1	전라북도 고시 제2007-368호 (2007.12.28.)	공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	주차장	요촌동 → 요촌동 291-3번지	660	증)116.6	776.6	전라북도 고시 제2007-368호 (2007.12.28.)	공전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변경	16	주차장	요촌동 → 요촌동 285-4번지	320	감)48.5	271.5	전라북도 고시 제2007-368호 (2007.12.28.)	공전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변경	21	전통시장 주차장	요촌동 416-2번지 일원	3,825	감)120.6	3,704.4	김제시 고시 제2011-50호 (2011.10.14.)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9	주차장	• 면적 변경 - 1,481㎡ → 1,623.8㎡, 증)142.8㎡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10	주차장	• 면적 변경 - 2,078㎡ → 2,067.3㎡, 감)10.7㎡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12	주차장	• 면적 변경 - 434㎡ → 421.1㎡, 감)12.9㎡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15	주차장	• 면적 변경 - 660㎡ → 776.6㎡, 증)116.6㎡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16	주차장	• 면적 변경 - 320㎡ → 271.5㎡, 감)48.5㎡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21	주차장	• 면적 변경 - 3,825㎡ → 3,704.4㎡, 감)120.6㎡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3.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요촌동 터미널 앞	5,038.6	감)5.0	5,033.6	전북 제324호 (77.12.30)	
변경	6	광장	교통광장	시청오거리	4,829	감)7.3	4,821.7	전라북도 고시 제2011-167호 (2011.06.10.)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광 장 (교통광장)	• 면적 변경 - 5,038.6㎡ → 5,033.6㎡, 감)5.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6	광 장 (교통광장)	• 면적 변경 - 4,829㎡ → 4,821.7㎡, 감)7.3㎡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	학 교	초등 학교	요촌동 214-1 → 요촌동 214-1번지 일원	36,493	감)251.2	36,241.8	전북 제126호 (81.5.4)	김제중앙 초등학교
변경	10	학 교	초등 학교	요촌동 → 요촌동 261-1번지 일원	19,070	감)278.4	18,791.6	전북 제126호 (81.5.4)	김제 초등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학 교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 36,493m² → 36,241.8m², 감)251.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10	학 교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 19,070m² → 18,791.6m², 감)278.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경계와 도시계획선 일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변경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지도 : “실음생략”

완주군 공고 제2024-783호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소양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소양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5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명 칭 : 소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4,6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완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12. 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9. 열람 기간 내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점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필지					6,575.3	4,686.0						
1	소양	명덕	1223-2	잡	3,311.9	3,311.9	완주군					
2	소양	명덕	1464-36	잡	140.1	140.1	국(기획재 정부)					
3	소양	명덕	1464-37	잡	137.0	137.0	국(기획재 정부)					
4	소양	명덕	1545-29	잡	343.0	306.0	국(건설부)					
5	소양	명덕	1545-4	잡	26.0	26.0	국(기획재 정부)					
6	소양	명덕	1545-40	제	145.0	25.0	국(건설부)					
7	소양	명덕	1464-84	답	2,472.3	740.0	이상현	전북 전주시 덕진 구 석소로 77, 107-601	삼례 농업 동조합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98-1	근저당, 지상권	

고창군 공고 제2024-889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고창군 고시 제2024-38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03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읍 월곡리 55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1-174호)
 - 사업명 : 고창읍 월곡~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 = 65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창군수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 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 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69필지		97,189.9	9,149							
1	고창읍 월암리	459	천	39,686.0	53	국	건설부				
2	고창읍 월곡리	117-3	도	69.0	11	국	고창군				
3	“	117-2	도	221.0	104	국	고창군				
4	“	117-1	도	36.0	22	국	고창군				
5	“	118-1	대	437.0	11	이*자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고창신용 협동조합*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근저당권	
6	“	559-1	도	437.0	43	국	건설부				
7	“	133-2	도	79.0	3	국	고창군				
8	“	101-2	도	40.0	40	차*순 외4인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9	“	554-11	천	717.0	42	국	건설부				
10	“	116-2	도	33.0	6	국	고창군				
11	“	116-4	전	267.0	7	송*현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12	“	116-1	전	1,313.0	463	송*현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13	“	111	대	190.0	6	최*순	고창군 고창읍 상원사길				
14	“	103	답	426.0	314	윤*화	인천시 남동구				
15	“	102	전	992.0	64	김*대	고창읍 월곡리				
16	“	101-1	답	367.0	288	차*순 외4인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17	“	100	전	853.0	6	김*선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18	“	83	전	56.0	33	서*환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19	“	82	답	1,309.0	180	류*복	고창군 고창읍 동서대로	고창신용 협동조합*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근저당권 지상권	
20	“	81-2	도	116.0	22	국	고창군				
21	“	135-1	답	2,972.0	338	이*전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선운산농업 협동조합*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현해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7길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 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69필지			97,189.9	9,149						
22	고창읍 월곡리	136-1	답	3,154.0	108	이*천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선운산농업 협동조합*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현해개*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7길	근저당권	
23	“	209-1	답	1,693.0	462	이*천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선운산농업 협동조합*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현해개*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7길	근저당권	
24	“	222	답	345.0	180	류*훈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25	“	81-1	답	2,159.0	754	박*순 외2인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26	“	135-3	도	96.0	96	전*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7	“	81-1	답	2,159.0	28	박*순 외2인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28	“	559	도	413.0	293	국	건설부				
29	“	135-2	도	10.0	10	전*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0	“	558-17	구	1,952.0	558	국	농림부				
31	“	136-2	도	10.0	10	이*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32	“	80-1	답	1,660.0	197	박*순 외2인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33	“	209-14	도	13.0	13	국	고창군				
34	“	557	도	240.0	15	국	건설부				
35	“	228-1	답	1,435.0	4	류*돈	광주시 광산구 산월로				
36	“	228-2	도	159.0	146	국	고창군				
37	“	228-1	답	1,435.0	48	류*돈	광주시 광산구 산월로				
38	“	220-1	대	417.0	3	김*식 외3인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39	“	209-4	답	655.0	254	류*돈	광주시 광산구 산월로				
40	“	205-1	답	3,415.0	365	김*운	서울 강서구 방화동				
41	“	238	전	46.0	46	망*근 우처 김씨	(사 정)				
42	“	558	구	15,890.0	285	국	농림부				
43	“	239-1	답	10.0	10	국	고창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 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69필지		97,189.9	9,149						
44	고창읍 월곡리	567-13	답	51.0	1	국	전라북도				
45	“	241-9	답	15.0	9	국	고창군				
46	“	241-7	답	173.0	42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47	“	241-1	답	3,916.0	487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48	“	209-15	도	159.0	127	국	고창군				
49	“	228-4	도	10.0	4	국	고창군				
50	“	229-2	도	17.0	10	국	고창군				
51	“	229-1	대	489.0	1	류*훈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2	“	571	도	1,091.0	119	국	건설부				
53	“	205-2	도	179.0	140	국	고창군				
54	“	237-1	대	173.0	11	유*후	인천시 서구 여우재로				
55	“	237-3	대	85.0	10	국	전라북도				
56	“	237-2	도	13.0	13	국	고창군				
57	“	569	도	149.0	74	국	건설부				
58	“	239	답	178.0	100	국	전라북도				
59	“	567-22	도	1,016.0	182	국	건설부				
60	“	241-8	답	13.0	13	국	고창군				
61	“	241-3	도	278.0	278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62	“	255	답	20.0	20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63	“	253	답	2,503.0	553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1길				
64	“	256	대	36.0	36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65	“	257-2	도	13.0	1	류*장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6	“	280-3	도	79.0	44	류*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7	“	254-3	도	79.0	79	임*혁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68	“	280-2	도	69.0	12	류*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9		858	도	28,338.9	842	국	고창군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물건의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계											
1	고창읍 월곡리	116-1	은행나무		1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2	“	116-1	컨테이너		1동 (18㎡)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3	“	116-1	광고판		1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4	“	116-1	과일나무, 철쭉		59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5	“	116-1	조립식 사무실		1동 (20㎡)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6	“	116-1	조립식 사무실		1동 (40㎡)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7	“	116-1	창고 (스레트)		1동 (70㎡)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8	“	116-1	비닐하우 스		1동 (110㎡)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9	“	111	블럭담		12m	고창군 고창읍 상원사길	최*순				
10	“	116-1	블록담 감나무		34m 2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송*현				
11	“	102	블록담 감나무		13m 2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김*대				
12	“	101-1	오디나무		88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차*순 외 4인				
13	“	229-2	담장 대문		15m 1개소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류*훈				
14	“	205-1	비닐 하우스		1동 (370㎡)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운				
15	“	571	창고 (스레트)		1동 (10㎡)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류*상				
16	“	569	담장 대문		17m 1개소	인천시 서구 여우재로	유*후				
17	“	241-1	묘목		112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원길	임*혁				
18	“	253	묘목		138주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1길	임*혁				
19	“	858	광고판		2주		예*사				
20	“	858	비석		1개소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달* 골초 미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2024. 2. 22.)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훈령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짝수 목요일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원격영상회의 등) 회의는 위원장,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등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는 위원장, 위원 등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로 본다.

제5조(의안 작성 등) ① 회의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안건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안건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주의, 개선 처분요구 등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신분상(징계)·재산상(1천만원 이상, 단 설계 및 시공방법 변경은 제외)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 법령, 제도 등 변경·신설 등이 필요한 사항

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부담 또는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재심의 신청의 처리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처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

5.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9.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시설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포함), 용역, 물품구매 등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0. 도정 주요정책·예산·계약 등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1.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⑤ 부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팀에서 작성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업무 담당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 작성은 자치감사 결과보고서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5항에 따른 부의안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안의 배부)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안건을 첨부하여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안의 배부는 전자메일 전송 또는 직접배부의 방법으로 배부한다.

제7조(의안의 심의)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소관 팀장이 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설명이 있는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치되,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종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제8조(답변) 사무국장과 의안에 관계된 감사담당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위원장,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인의 진술권 등)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일 전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 등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통보·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5급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공가 또는 출장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의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2.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되, 위원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 회의 의결서와 감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감사위원 회의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표결결과 및 의결내용(소수의견 포함)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징계·문책의 양정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중 제4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녹음기록(전자파일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부의안건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경정)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회의록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회의록이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회의록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관리) ① 회의록은 심의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무국 내에서 업무상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열람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열람 등을 한 사람은 그 내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위원 회의 회피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 정은영(280-23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83호

공인 등록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4년 5월 3일

1. 공인의 등록

가. 공인 등록사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남원 관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남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공인 제작 후 등록

나. 최초 사용년월일: 2024. 05. 13.

다. 공인 등록내용

공 인 명(규격)	
남원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3.6cm×3.6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이정희 주무관 (620-750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